

제290회 임시회
2010. 6. 18(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 6. 18.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5월 27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10년 6월 3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10. 6. 15.)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강길중)

1. 제안이유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법률 제
10143호, '10. 3. 22.)되어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폐지

III.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장용대)

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진상조사 기간이

2010년 3월 24일로 만료되어, 위원회 설치근거법이 폐지됨에 따라 실무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는

- 우리도는 2004년 12월 31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진상 조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도민들로부터 13,245건의 피해신고를 접수, 사실조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진달을 완료하였음.
또한 정부에서도 진상조사기간을 2010년 3월 24일로 종료하여 진상조사 사무를 종료하고 관련 법령을 폐지함에 따라 우리도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사무도 사실상 종료된 상태임.
- 정부에서는 미처리된 강제동원 피해조사의 완료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에 대한 사무종료와 근거법령의 폐지로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는 다른 의견이 없음.
다만, 정부에서 지속추진하고 있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업무를 도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도민편익 시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 요지 : “생략”

VI. 심사 결과 : 원안의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503
----------	-----

제출연월일 : 2010년 5월 2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법률 제10143호, '10. 3. 22.)되어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17, 타법개정]

제11조(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7.3.23>

- 1.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
- 2. 피해자와 친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 3.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피해자 및 친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3.23>

④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143호, 2010. 3.22, 제정]

부칙 <제10143호, 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본다.

제3조(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종전의 두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행위와 종전의 두 위원회에 행한 행위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행하거나 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으로 본다.

제4조(위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5조(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2.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